

의안 번호	1883
----------	------

활동기간 : 19. 9. 6. ~ 20. 9. 5.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20. 9.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목 차

I.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1. 설치목적
2. 추진경과
3. 위원회 활동내역

II.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1. 제1차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2. '기술패권'으로 본 한일관계와 독도수호' 세미나 개최
3. '다케시마의 날' 규탄 집회
4. 독도탐방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 개최
5. '독도수호를 위한 실천방안과 과제' 세미나 개최 등

III.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입법활동

1. 서울특별시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불입-보도자료(12건)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2019. 9. 6.기준)

구 분	성 명	지역구	상임위원회 ('19. 9 기준)	소 속
위원장		홍 성 룡	송 파 3	도시안전건설
부위원장		김 화 숙	비 레	보건복지
부위원장		한 기 영	비 레	행정자치
위 원		강 동 길	성 북 3	행정자치
위 원		김 기 대	성 동 3	도시안전건설
위 원		김 정 태	영등포 2	기획경제
위 원		김 제 리	용 산 1	환경수자원
위 원		김 춘 례	성 북 1	문화체육관광
위 원		박 순 규	중 구 1	도시안전건설
위 원		양 민 규	영등포 4	교 육
위 원		유 용	동 작 4	기획경제
위 원		이 광 호	비 레	기획경제
위 원		이 동 현	성 동 1	행정자치
위 원		장 상 기	강 서 6	교 육
위 원		황 인 구	강 동 4	교 육

더불어
민주당

1.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I

위원회 구성

설치목적

- 천만시민의 대표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왜곡된 한·일 간의 역사를 바로 잡아,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 청경을 만들고, 독도수호에 앞장서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독도 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추진경과

- 2019. 7. 25.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 2019. 9. 5.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
- 2019. 9. 6.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
- 2020. 2. 21.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
- 2020. 2. 21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 2020. 9. 05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위원회 활동내역

- 제1차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회의개최('19.09.06.)
 - 내 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제2차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초청 세미나 개최('19.11.01.)
 - 내 용 : '기술패권'으로 본 한일관계와 독도수호' 초청 강연
- 제3차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다케시마의 날 규탄 집회 개최('20.02.21.)
 - 내 용 : '다케시마의 날' 규탄 집회
- 제4차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20.03.11.)
 - 내 용 : 독도경비대 위문품 및 의료품 전달
- 제5차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탐방 ('20.06.01~'20.06.03)
 - 내 용 : 독도수호 결의대회 개최, 독도경비대 위문품 및 의료품 전달
- 제6차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세미나 개최 ('20.06.03)
 - 내 용 : 독도의 진실과 극일, 독도수호를 위한 실천 방안과 과제

II.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II

위원회 주요활동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1차)

- 일 시 : 2019. 9. 6.(목) 16: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직 위	위원명	소속 위원회	지역구	소속정당
위원장	홍성룡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파 3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김화숙	보건복지위원회	비례	
부위원장	한기영	보건복지위원회	비례	



(앞줄 왼쪽부터 김화숙, 홍성룡, 한기영 의원)

(뒷줄 왼쪽부터 양민규, 이광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장상기, 이동현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초청 세미나 개최(2차)

- 일 시 : 2019. 11. 1.(금) 16:00
- 장 소 :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강연주제 : '기술패권'으로 본 한일관계와 독도수호'
- 초강사: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약력: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 삼성전자 상무
- 강연 주요 내용
 -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제한은 한국의 '반도체패권'을 막으려는 경제침략이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첨단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함.
 - 현재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제와 산업이며, 독도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갈등의 문제도 과거와 같이 역사적·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
 - 기술 패권 자체가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첨단 산업 분야 이공계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기초 과학 인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당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게 나서는데 중요함.





■ 서울특별시의회 '다케시마의 날' 규탄 결의대회 개최

- 일 시 : 2020. 2. 21. (금)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 참 석 : 독도특위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0명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규탄문

일본은 거짓 “다케시마의 날” 을 철회하고

독도침탈을 중단하라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1. 홍성룡 위원장

독도는 512년 신라가 독도를 편입한 이래로 한 번도 대한민국 고유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주인이 없는 독도라고 우기며,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2005년부터는 시마네현이 거짓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여 오늘까지 독도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2. 김화숙 부위원장

일본의 독도 도발 만행은 끝이 없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은 정기국회에서 행한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부렸는데 7년 동안 똑 같은 주장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또 영토담당 장관은 도쿄에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하는 자리에서 태평양전쟁 후 연합군 점령통치를 받던 시기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3. 김기대 위원

지방 시마네현에서 기념하던 거짓 “다케시마의 날”을 지난 18일에는 일본 국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한다. 독도탈환을 알리는 “제3회 도쿄 다케시마의 날” 대집회가 국회 내에서 열렸다고 하니 날이 갈수록 거짓 주장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독도침탈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영토 의원연맹 회장은 일본의 소중한 국가 중 일부가 다른 나라에 의해 침해당하고, 불법 점거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독도 침탈을 노골적으로 부추겼다고 한다.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

4. 유용 위원

그동안 일본은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어,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것으로 만들려는 침략자의 만행을 일삼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며 미래 세대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청소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독도침탈에 혈안이 되고 있다.

5. 이동현 위원

시마네현 지방 행사에 머물던 자칭 “다케시마의 날”을 아베 정권이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키더니, 올해도 뻔뻔스럽게 차관급 각료를 파견한다고 한다. 영토문제 장관 대신에 차관을 보내는 속임수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일본의 영토야욕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한다.

6. 홍성룡 위원장

서울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주장의 거짓을 알리며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각오로 독도수호 의지를 다질 것이다. 또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제정, 독도교육 강화, 독도홍보 강화, 독도전시관 운영 등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독도수호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몸소 앞장서 실천할 것임을 다짐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활동기간 연장의견

-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9년 9월 6일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하였으나,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독도수호에 앞장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이 부족한 바, 충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확보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활동기간을 2020년 9월 5일까지 연장함.

● 향후계획(' 20. 3 기준)

- 2020. 5월 : 독도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제시를 위한 독도탐방 제출
- 2020. 7월 : 독도수호를 위한 정책제안
- 2020. 9월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 추진경과

-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20. 2. 21)
-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20. 2. 21)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울릉도 · 독도 해양연구기지 방문

- 일시 : 20. 6. 1.(월)
- 장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울릉도 · 독도 해양연구기지)
- 참석자: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위원, 해양연구소 연구원 등
- 활동내용 : '독도 해양영토의 중요성과 가치' 특강(김윤배 박사)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울릉군청 방문

- 일 시 : 20. 6. 2(화)
- 장 소 : 울릉군청 군수실
- 참석자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위원, 울릉군수(김병수 군수)
- 내 용 : 독도 · 울릉도 현황 브리핑, 서울시와 울릉군의 상생 발전방안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울릉경비대 방문

- 일 시 : 20. 6. 2(화)
- 장 소 : 울릉경비대(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70-4)
- 참석자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위원, 독도경비대원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수호 결의대회

- 일 시 : 20. 6. 2(화)
- 장 소 : 독도, 독도경비대
- 참석자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위원, 관계공무원
- 주요행사 : 독도수호 결의대회 개최,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식 등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 6. 3.(수)
- 장 소 : 울릉도 마리아 호텔 세미나실
- 참석자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위원
- 내 용 : 독도의 진실과 극일, 독도수호를 위한 실천방안과 과제





Ⅲ.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입법활동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공동발의 조례안 총 5건

연번	조례명	제안요지
1	서울특별시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시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5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6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6건.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787
----------	-----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25일

발 의 자 : 홍성룡, 강동길, 박순규, 김정환,
김태호, 김경영, 김제리, 이상훈,
조상호, 이병도, 박상구, 황인구,
박기재, 최웅식, 이정인, 최 선,
송아량, 김 경, 채인묵, 이호대
의원 (20명)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수호에 앞장서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선임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되, 필요 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발표, 시네마현 편입,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 도발적 망동을 멈추지 않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음.
- 이제 더 이상 우리 땅을 지키는 일이 미뤄져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대국민적 행동과 노력이 개시돼야 함.
-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 첩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이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우리 땅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시대 이래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대한민국 주권과 민족정기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 채택,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 및 행사 개최 등과 같은 도발적 망동과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2018년 3월 일본 정부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허위 주장을 명기하고 같은 해 7월에는 2019년부터 고등학생에게도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안을 고시한바, 이는 현재 일본 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고 나아가 두 국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매우 악의적인 처사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유지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해 그동안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한 채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보복조치 등을 취한 상황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한 대국민적 행동과 노력이 개시돼야 한다.

이를 통해 왜곡된 한·일 간의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 첩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수호에 앞장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붙임-2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415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3일

발 의 자 : 홍성룡, 김화숙, 한기영, 강동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춘례,
박순규,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동현, 장상기, 황인구 의원
(15명)

1. 제안이유

일본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독도교육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3. 독도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8
----------	------

발의년월일 : 2020년 1월 31일

발 의 자 : 홍성룡, 김화숙, 한기영, 강동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춘례,
박순규,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동현, 장상기, 황인구 의원
(15명)

1. 제안이유

일본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독도교육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
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5.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 연수사업
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
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
사 등을 실시할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
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4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95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1일

발 의 자 : 홍성룡, 김화숙, 한기영, 강동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춘례,
박순규,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동현, 장상기, 황인구 의원
(15명)

1. 제안이유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에 서울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공간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3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 홍성룡, 김화숙, 한기영, 강동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춘례,
박순규,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동현, 장상기, 황인구, 최웅식,
임종국 의원(17명)

1. 제안이유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활동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나,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찬양하는 행위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호가목에 따른 행위를 조사·연구하여 이를 홍보하는 것과 제1호나목에 따른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활동의 제한) 시장은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의 패널, 강연자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의회 사무처
3.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제7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5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의자 : 홍성룡, 김화숙, 한기영, 강동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춘례,
박순규,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동현, 장상기, 황인구, 최웅식,
임종국 의원(17명)

1. 제안이유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활동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얻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나,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찬양하는 행위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호가목에 따른 행위를 조사·연구하여 이를 홍보하는 것과 제1호나목에 따른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 등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활동의 제한) 교육감은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공개강좌, 공청회, 토론회 등의 패널, 강연자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
3.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제7조(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교육감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 보도자료 총 12건

2019.9.9.(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홍성룡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 원 명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3매

시의원	홍 성 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서울시의회, '독도수호' 나선다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 위원장에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선임
- '더 이상 실효적 지배에 만족하지 말고 일본의 침탈 야욕에 맞설 강력한 대응논리와 대비책 마련해야'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는 지난 6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부위원장은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 독도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지난 6일(금) 서울시의회 제 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선임 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 의원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한 채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 왔지만,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 채택,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등과 같은 도발적 망동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 “이제는 더 이상 실효적 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계속되는 침탈 야욕에 맞설 강력한 대응논리와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독도특위를 구성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 이어 홍 의원은 “독도특위는 천만 서울시민의 독도수호 의지를 적극 대변하고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의회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독도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활동 방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1호
 Tel : 02) 2180-8441~2,
 Fax : 02) 2180-8445
 E-mail : dokdo_corea@hanmail.net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



(앞줄 왼쪽부터 김화숙, 홍성룡, 한기영)

(뒷줄 왼쪽부터 양민규, 이광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장상기, 이동현 의원)

2019.9.30.(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홍성룡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 원 명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3매

시의원	홍 성 룡	010-6346-2773

독도 침탈야욕을 드러낸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 서울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야욕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 요구 -

- 서울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3선거구)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 9월 27일 일본 정부는 2019년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에 지난 7월 있었던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인근 침범과 한국 공군 전투기의 경고사격 대응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당시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는 물론이고 경고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독도 인근 영공은 일본영공으로 영공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자위대법 제84조에 따른 항공자위대 뿐이다.”며 외교적 항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 이에 대해 홍성룡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우리의 역사적 문헌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문헌과 고문서, 고지도 등 많은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일본은 독도침탈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홍 의원은 또한, “일본의 주장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일본의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 가능성까지 처음으로 적시한 것으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행위이다. 또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서는 군사 행동까지 감행할 수 있음을 대내외로 선포한 것으로, 한일관계를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이 적대국으로 명시하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거듭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을 경계했다.
- 일본 자위대법 제84조에 따르면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한일 간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일본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독도에서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또 백서는 일본 주변 해역, 공역의 경계 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명인 ‘다케시마’로 표시하는 등 15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청소년을 교육시켜오면서 미래세대의 선전포고를 감행하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군사행동으로

독도침탈 전쟁도 감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일본의 어떠한 형태의 독도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만약 군사적 충돌을 감행해 오더라도 일본을 퇴치하고 독도를 수호할 수 있는 준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국주의시대 독도를 침탈했던 과거역사를 사죄하고 다시는 독도침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일본의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앞줄 왼쪽부터 김화숙, 홍성룡, 한기영)

(뒷줄 왼쪽부터 양민규, 이광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장상기, 이동현 의원)

2019.10.25.(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시의원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독도칙령 반포 119주년” 을 결연한 의지로 기념한다

- 10월 25일은 대한제국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언한 날
- 시의회 독도특위,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의지로 독도수호에 나설 터

-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제1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고(제2조), 미진한 제조(諸條)는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제에 마련하며(제5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6조)’
-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내용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반포한 것으로 이를 흔히 ‘독도칙령’이라 부르고 있다.
-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독도칙

령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인 자료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면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은 독도칙령에 의해 무너진다”라고 주장했다.

- 이어 홍 위원장은 “일본은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이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지 ‘독도칙령’을 숙독하고, 독도침탈 만행을 사죄하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홍 위원장은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본격화하던 때에 독도칙령을 반포하여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하게 확립하신 고종황제의 존엄하고 거룩함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면서 “독도칙령 반포일을 맞아 서울시의회 독도특위 위원 모두 독도칙령 반포를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 끝으로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독도특위는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독도수호에 만전을 다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룡(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1호

Tel : 02) 2180-8441~2, Fax : 02) 2180-8445

E-mail : dokdo_corea@hanmail.net



(앞줄 왼쪽부터 김화숙, 홍성룡, 한기영)

(뒷줄 왼쪽부터 양민규, 이광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장상기, 이동현 의원)

2019. 11. 4(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담당의원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매

서울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양향자 부위원장 초청 강연회 개최!

- 첨단기술·산업분야 육성을 통한 새로운 한일관계 모델 제시 -

- 서울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지난 1일(금)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서울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술패권으로 본 한일관계와 독도수호’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 강연을 통해 양향자 부위원장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제한은 한국의 ‘반도체패권’을 막으려는 경제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첨단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 양 부위원장은 “현재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제와 산업이다.”고 설명하고, “독도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갈등의 문제도 과거와 같이 역사적·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기술 패권 자체가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첨단 산업 분야 이공계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기초과학 인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당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독도수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일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산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강연 내용에 공감한다.”면서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천만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민의 독도수호 의지를 적극 대변하고,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대일본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 한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차원의 독도수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에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룡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1호

Tel : 02) 2180-8441~2, Fax : 02) 2180-8445

E-mail : dokdo_corea@hanmail.net

2020.2.21.(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6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서울시의회, '다케시마의 날' 규탄 결의대회 개최

-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 강력 규탄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
-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독도수호 의지 다져

-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1일(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이날 규탄대회는 날로 심화·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다케시마의 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9년 9월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 위원장 홍성룡)가 주관했다.
- 이날 규탄대회에는 홍성룡 독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독도특위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했다.

- 홍 위원장은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하게 규탄 한다.”라고 밝혔다.

- 이어 홍 위원장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직후인 2013년 2월부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를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시켜 독도 침탈 야욕을 한층 노골화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이자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거짓 역사관을 주입하여 미래 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홍 위원장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면서,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도쿄에 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즉시 폐지하고, 지난날의 범죄행위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끝으로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독도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천만 서울 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독도특위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하여 해당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 위원장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전했다.

□ 첨부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규탄문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룡(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1호

Tel : 02) 2180-8441~2, Fax : 02) 2180-8445

E-mail : dokdo_corea@hanmail.net

<첨부 : 사진자료>



▲ 21(금) 서울시의회는 제291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관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규탄문

일본은 거짓 “다케시마의 날”을 철회하고 독도침탈을 중단하라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고유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우기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부터는 거짓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여 오늘까지 독도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도발 만행은 끝이 없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은 정기국회에서 행한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부렸다. 7년 동안 똑 같은 주장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또 영토문제담당 장관은 도쿄에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하는 자리에서 태평양전쟁 후 연합군 점령통치를 받던 시기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지난 18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에서 기념하던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일본 국회에서 가졌다고 한다. 독도탈환을 알리는 “제3회 도쿄 다케시마의 날” 대집회가 국회 내에서 열렸다고 하니 날이 갈수록 거짓 주장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독도침탈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영토의원연맹 회장은 일본의 소중한 국가 중 일부가 다른 나라에 의해 침해당하고, 불법 점거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독도침탈을 노골적으로 부추겼다고 한다.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동안 일본은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어,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것으로 만들려는 침략자의 만행을 일삼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며 미래 세대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청소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독도침탈에 혈안이 되고 있다.

시마네현 지방 행사에 머물던 자칭 “다케시마의 날”을 아베 정권이 중앙 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키더니, 올해도 뻔뻔스럽게 차관급 각료를 파견한다고 한다. 영토문제 장관 대신에 차관을 보내는 속임수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일본의 영토야욕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한다.

서울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주장의 거짓을 알리며,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각오로 독도수호 의지를 다질 것이다. 또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제정, 독도교육 강화, 독도홍보 강화, 독도전시관 운영 등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독도수호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몸소 앞장서 실천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0.3.6.(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정

- 홍성룡 독도수호특위 위원장, '조례 제정 통해 독도영토 주권의식 제고, 독도 침탈 야욕 적극 대응'
- 시교육청 독도수호 교육사업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 탐방 및 현장 체험활동 적극 지원

최근 일본이 시마네현 지방정부 행사로 치르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를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하여 독도 침탈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6일(금)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 독도수호특위 위원 15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은 물론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보급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학생 체험활동 및 교원 연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 홍성룡 위원장은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이자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다.

- 이어 홍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독도수호 교육사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와 독도수호특위는 조례 제정, 독도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독도수호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독도수호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한편, 서울시의회는 2월 21일(금)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9월 출범하여 이달 5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독도수호특위 활동기간을 올해 9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서울특별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 독도수호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갈수록 심화·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하여 독도수호에 앞장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1호
 Tel : 02) 2180-8441~2, Fax : 02) 2180-8445
 E-mail : dokdo_corea@hanmail.net



- ▲ 2월 21(금)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위원장 홍성룡)가 제291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20.3.6.(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정

- 홍성룡 독도수호특위 위원장, '조례 제정 통해 독도영토 주권의식 제고, 독도 침탈 야욕 적극 대응'
- 시교육청 독도수호 교육사업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 탐방 및 현장 체험활동 적극 지원

- 최근 일본이 시마네현 지방정부 행사로 치르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를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하여 독도 침탈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 서울시의회는 6일(금)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 독도수호특위 위원 15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은 물론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보급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학생 체험활동 및 교원 연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 홍성룡 위원장은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이자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다.

- 이어 홍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독도수호 교육사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와 독도수호특위는 조례 제정, 독도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독도수호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독도수호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한편, 서울시의회는 2월 21일(금)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9월 출범하여 이달 5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독도수호특위 활동기간을 올해 9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서울특별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 독도수호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갈수록 심화·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하여 독도수호에 앞장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1호
 Tel : 02) 2180-8441~2, Fax : 02) 2180-8445
 E-mail : dokdo_corea@hanmail.net



2020.3.11.(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3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경비대에 위문품 전달'

- 대한민국 영토주권 수호 위해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독도 경비대에 라면·과자 등 위문품 전달
- 홍성룡 위원장, '우리 영토 지키는 젊은이들 피와 땀 헛되지 않도록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11(수) 오후 1시 30분 시의회 본관 앞에서 독도경비대원들을 응원하기 위한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행사'를 가졌다.
- 이날 행사는 독도경비대가 동절기 탐방객 감소 등으로 간식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이광호 특위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 독도경비대에 전달된 위문품은 라면, 과자 등 대원들의 간식으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시민, 독도수호특위 위원들의 후원으로 준비됐다.
- 홍성룡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은 "독도경비대는 단순 경계업무가 아닌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갖은 악조건 속에서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원들을 격려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 홍 위원장은 이어 “독도 왜곡 전시관 확장,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날로 노골화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든든하다.”라며, “우리의 영토, 독도를 지키는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는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정,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등 독도수호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홍성룡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1호

Tel : 02) 2180-8441~2, Fax : 02) 2180-8445

E-mail : dokdo_corea@hanmail.net

〈첨부 : 사진자료〉



▲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가 11(수) 의회 본관 앞에서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앞줄 왼쪽부터) 장상기, 이광호, 김제리, 홍성룡, 최웅식, 이동현 의원
(뒷줄 왼쪽부터) 강동길, 김화숙, 박순규, 유용, 한기영 의원

2020.4.23.(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독도 관할(경북) 이외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 일반시민 대상 독도교육 관련 조례 제정
- 홍성룡 위원장 “서울시민 독도교육 통해 독도수호 의지 다지는 기회 될 것으로 확신”

- 지난 22일(수)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전체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달 29일(수)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 조례안에는 ▲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주권의식 제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독도교육 지원 관련 시책 마련과 지원계획 수립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중앙부처, 서울시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성룡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은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고, 시마네현 지방정부 행사로 치르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하여 독도 침탈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 이외의 자치단체에서 일반 시민을 위한 독도교육 관련 조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도주권 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이어 홍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 통과된 데 이어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독도교육과 현장체험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과 독도수호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끝으로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와 독도수호특위는 조례 제정, 독도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독도수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독도수호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는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에 이어 독도탐방 계획수립 등 독도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룡(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1호

Tel : 02) 2180-8441~2, Fax : 02) 2180-8445

E-mail : dokdo_corea@hanmail.net

2020.4.28.(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제정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근거 마련
- 홍성룡 위원장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명예 회복하고 유족 고통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서울시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문화·학술사업과 추모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 지난 27일(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전체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29일(수)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 조례안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추모 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성룡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은 “1938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782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군수공장, 토건, 탄광소, 군 소속 작업장 등에 강제동원하여 가혹한 노동착취를 했다. 당시 행해진 강제동원으로 많은 분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돌아가시거나 광복 후에도 끝내 귀국하지 못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 홍 위원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를 정리하고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 홍 위원장은 이어 “본 조례가 시행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처럼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룡(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1호

Tel : 02) 2180-8441~2, Fax : 02) 2180-8445

E-mail : dokdo_corea@hanmail.net

2020.6.3.(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9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방문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 독도서 독도수호 결의대회 개최, 독도수호 의지 다져
- 독도경비대 노고 격려하고 위문품 전달

-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2일 독도를 방문,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 규탄하고,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천명하며 독도수호 의지를 다졌다.
- 이날 ‘독도수호 결의대회’는 독도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독도수호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울릉군청 방문, 울릉·독도 해양연구기지 견학, 울릉·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및 독도탐방, 세미나 개최, 독도박물관 견학 등 6.1.부터 6.3.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 이번 독도수호 결의대회에는 홍성룡 위원장과 김화숙, 한기영 부위원장을 비롯 강동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박순규, 양민규, 이광호, 황인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 첫째 날인 1일에는 울릉군청을 방문, 김병수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와 울릉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울릉군 경제의 어려움을 들은 독도수호특위 위원들은 서울시와 울릉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에서는 김윤배 대장으로부터 독도 해양 영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김윤배 대장은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독도교육 조례 제정, 소위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개최,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등 그 동안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의 활동과 노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독도 해양주권이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 이날 특강은 질의·문답이 장시간 이어지는 등 예정된 시간을 넘겨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 둘째 날인 2일에는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과 독도 탐방, 울릉경비대 위문 방문이 진행됐다. 독도 탐방 직후, 홍성룡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은 “고종황제께서 독도칙령을 반포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에 독도를 방문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라면서, “독도 영토의 중요성과 의미, 소중함을 현장체험을 통해 피부로 느끼고자 이번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 이어 홍 위원장은 “보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독도에 직접 발을 딛고 독도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교

육청·서울시 독도 교육 조례를 독도수호특위 공동발의로 제정한 바 있다”라며, “조례시행과 더불어 현재 계획 중인 독도전시관 운영이 활성화되면 독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정태 위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효적 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논리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의회,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독도 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 독도경비대 및 울릉경비대 위문방문에는 라면, 과자, 피자, 치킨, 티셔츠 등이 위문품으로 전달됐다.
- 셋째 날인 3일에는 ‘독도의 진실과 극일, 독도 수호를 위한 실천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모든 위원들이 ▲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가 우리영토인 근거 ▲ 독도 수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 중 하나를 택일하여 각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 동안 독도수호특위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한편, 이번 울릉·독도경비대 위문방문 등 독도수호 결의대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한 후 현지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룡(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1호

Tel : 02) 2180-8441~2, Fax : 02) 2180-8445

E-mail : dokdo_corea@hanmail.net

2020.6.29.(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위원장	홍성룡	010-6346-2773
의원연구실 601호	Tel	02-2180-8441
	Fax	02-2180-8445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

-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 발전 위한 교육·학술 문화·추모사업 및 유적 발굴·보존사업 지원 근거 마련
- 홍성룡 위원장,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코스 개발해 서울시민과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조국 광복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과 후손들의 정당한 대우와 예우에 도움 되길 기대'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와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각각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은 물론 교육, 학술, 문화, 추모사업 추진, 지원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과 행정·재정적 지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유적 발굴이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이어 홍 위원장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와 유적지가 많다”며, “조례 제정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코스가 개발되면 서울 시민과 청소년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과 후손들이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는데 본 조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룡(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1호
Tel : 02) 2180-8441~2, Fax : 02) 2180-8445
E-mail : dokdo_corea@hanmail.net



(앞줄 왼쪽부터 김화숙, 홍성룡, 한기영)
(뒷줄 왼쪽부터 양민규, 이광호,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장상기, 이동현 의원)

■ 직원명단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인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선 희	
	전 문 위 원	박 태 현	
	입 법 조 사 관	김 우 영	
	주 무 관	이 강 수	